

최적방지시설 선정 연구사업 협약서

노란색의 질산가스를 저감키 위한 『최적방지시설 선정 연구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인천도금협회”와 “인천환경전문공사업협회”, “사단법인 녹색환경협의회”(이하 단체라 칭한다)는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도금업체 알루미늄 화학연마(아노다이징) 광택공정에서 발생하는 노란색 질산가스를 저감키 위한 『최적방지시설 선정 연구사업』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인천도금협회”와 “단체”가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및 임무) ① 본 협약의 사업범위는 “인천광역시”와 “인천도금협회”가 지정하는 도금업체의 화학연마 공정에서 배출되는 노란색 질산가스 저감 최적방지시설(시설 또는 약품)을 선정하기 위한 연구사업으로 한다.

② 본 연구사업을 시행하는 “단체”는 사업시행전 대기오염도와 최적방지시설 연구사업 선정후 대기오염도를 측정한 데이터를 포함한 연구결과물을 “인천광역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사업비 등) 사업비는 “단체”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와 “인천도금협회”는 “단체”의 실증검사 등을 위한 배출업체(화학연마)의 전기, 상수도 사용 등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기간) 본 사업의 사업기간은 협약한 날로부터 2013년 11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사업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인천광역시”, “인천도금협회”와 “단체”가 협의하여 사업기간을 연장(3개월 이내) 할 수 있다.

제5조(안전계획 수립 및 시행) “단체”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현장에서 야기될 수 있는 일체의 인명 피해 및 불의의 사고에 대하여 “단체”의 명의로 책임을 진다.

제6조(연구성과물의 권리 등) ① 사업 완료시 “단체”는 연구성과물에 대한 권리를 각각의 특허등록 등을 통해 “단체” 스스로 확보하여야 한다.

② “인천광역시”는 연구성과물에 대하여 화학연마 배출업체에서 동 연구성과물을 사용하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제7조(성실 및 보안의 의무) “인천광역시”, “인천도금협회”와 “단체”는 각자의 소관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 수행과 관련된 정보 또는 비밀사항은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협약의 해약 및 해지 등) ① 이 협약은 사정으로 인하여 “인천광역시”, “인천도금협회”와 “단체”가 이 본 협약을 해약 또는 해지하기로 합의 하였을 때와 “단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지연시켰을 때 해약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이 협약은 “인천광역시”, “인천도금협회”와 “단체”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이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인천광역시”, “인천도금협회”와 “단체”가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협약은 협약체결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약서의 보관) 이 협약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과 “인천도금협회장”, “인천환경전문공사업협회장”, “사단법인녹색환경협의회이사장”이 각각 날인 후 1부씩 보관한다.

2013년 8월 7 일

인천광역시장	송영길	인천환경전문공사업협회장	정충의
인천도금협회장	한동한	사단법인녹색환경협의회이사장	장명배